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제2호가목”을 “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1.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사업
2.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3.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 부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14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 ② (생략)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u>도시 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생략) 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 고사업으로서 <u>같은 법 시행령</u>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다음</u> <u>각 호의</u> ----- ----- -----. <u>1.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사업</u> <u>2.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u> <u>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u> <u>3.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u> <u>부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u> <u>「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u> <u>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u> <u>물류서비스업</u>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같은 법 시행령</u>

<u>제2조제1호다목에</u> 따른 <u>지하철</u> <u>역</u> 또는 같은 조 <u>제2호가목에</u>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 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 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생 략)	<u>제2조제1항제1호다목--</u> <u>도시철</u> <u>도역</u> ----- <u>제1항제2호가</u> <u>목</u>----- ----- -----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3960